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732

제출년월일 : 2015.11.18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개정이유

○ 현재 건립중인 「고려인 문화센터」에 대한 설치·운영 등 제도 정비 필요

○ 외국인주민을 위해 운영중인 「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」 및 「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」에 대해 운영근거를 정비하여 효율적 관리·운영 도모

○ 「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」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외국인이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내·외국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

□ 주요내용

○ **「고려인 문화센터」** 설치·운영근거 등 마련

-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고려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(제14조, 제15조)
- 문화센터의 기능 및 운영경비 등 지원을 위한 규정(제16조~제19조)

○ **「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」** 설치·운영근거 마련

-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(제20조)
- 상담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경비 등 지원을 위한 규정(제21조~제24조)

○ **「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」** 설치·운영근거 마련

-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(제25조 및 제26조)
-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및 위·수탁 관련 규정(제27조~제29조)

○ **「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」** 운영근거 마련

-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 구성과 기능 규정 신설(제37조~제38조)
- 운영 및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 규정(제39조~제41조)

외국인주민센터 임복혈 2015-11-17 20:25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 1

□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 3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 4 (비용추계서 참조)

□ 사전 입법예고 결과 : 붙임 5 (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참조)

○ 입법예고 : 2015. 10. 20. ~ 11. 9. 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붙임 6

○ 방침결정문 : 붙임 7

외국인주민센터 임복열 2015-11-17 20:25

〈 붙임 1 〉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재지정할 수 있으며" 를 "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" 로, "별도" 를 "별도의" 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"취소" 를 "해지"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" 를 "할 수 있다" 로 한다.

제4장(제14조부터 제20조까지) 및 제5장(제21조부터 제27조까지)을 각각 제7장(제30조부터 제36조까지) 및 제9장(제42조부터 제48조까지)으로 하고, 제4장(제14조부터 제19조까지), 제5장(제20조부터 제24조까지), 제6장(제25조부터 제29조까지) 및 제8장(제37조부터 제41조까지)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

제14조(용어의 정의) "고려인 주민" 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, 항일독립운동,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15조(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(이하 "문화센터" 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주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·수탁 계약에 따른다.

제16조(기능)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고려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· 상담, 문화 · 체육 행사
2. 고려인 주민 자녀 교육 · 보육 지원 사업
3.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·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4. 시민의 고려인 이해, 내 · 외국인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7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선량한 관리·의무자로서 고려인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·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외국인주민센터 임복렬 2015-11-17 20:25

제18조(위탁의 해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
2.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제19조(운영경비 등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센터의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장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

제20조(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상담지원을 위해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(이하 "상담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상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·수탁 계약에 따른다.

제21조(기능) 상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외국인주민 전화상담, 방문상담 및 출장상담에 관한 업무
2. 생활정보제공, 임금체불·퇴직금, 연금·보험, 사업장변경, 재고용, 산업재해, 출입국, 의료, 민사·형사 사건, 성희롱·성폭력, 가정불화, 가정폭력 등 외국인주민 고충과 관련된 상담지원 및 연계 업무
3. 그 밖의 통역 상담지원 관련 업무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2조(운영경비 등 지원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지원센터의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3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상담지원센터의 선량한 관리·의무자로서 외국인의 인권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·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24조(위탁의 해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

외국인주민센터 임복렬 2015-11-17 20:25

제6장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

제25조(용어의 정의) "이주배경 청소년"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8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.

제26조(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정책 시행을 위하여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(이하 "청소년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청소년센터를 「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·수탁 계약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센터의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7조(기능) 청소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· 정서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
2.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3.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4.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청소년센터의 선량한 관리·의무자로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29조(위탁의 해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2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
2.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3.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제8장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

제37조(대표자 협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"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" (이하 "대표자 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외국인주민센터 임복렬 2015-11-17 20:25

② 대표자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대표자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④ 대표자 협의회는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⑤ 대표자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 중 사임 등으로 위원의 궐위가 발생하여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.

제37조의2(대표자 협의회의 존속기한) 대표자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.
제38조(기능) 대표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1. 외국인 주민 관련 각종 시책 의견수렴
2. 다문화 축제 및 행사 자문
3. 시책 홍보 및 외국인주민 의견 전달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9조(운영) ① 위원장은 대표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대표자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정기회 : 격월 개최
2. 임시회 :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③ 대표자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4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1.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
3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 참석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

제41조(수당 및 여비) 대표자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외국인주민센터 임복렬 2015-11-17 20:25

소관 실·과		외국인주민센터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 종 철
	계장·팀장 직위·성명	외국인정책계장 목 영 현
	담당자 성명·전화	임 복 렬 (행정 3299)

외국인주민센터 임복렬 2015-11-17 20:25

〈 붙임 2 〉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장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	**제3장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**
제9조(설치 및 운영)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를 「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재지정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.	**제9조(설치 및 운영)**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-- ----------, 한 번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-----별도의 ---------.
제12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로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**제12조(위탁의 해지)** ---------- ----------해지할 수 있다.
〈신 설〉	**제4장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**
〈신 설〉	**제14조(용어의 정의)** "고려인 주민"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, 항일독립운동, 강제동원,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〈신 설〉	**제15조(설치 및 운영)**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(이하 "문화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주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·수탁 계약에 따른다.

외국인주민센터 임복렬 2015-11-17 20:25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**제16조(기능)**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고려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· 상담, 문화 · 체육 행사 2. 고려인 주민 자녀 교육 · 보육 지원 사업 3.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·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. 시민의 고려인 이해, 내 · 외국인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신 설>	**제17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의 선량한 관리·의무자로서 고려인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·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<신 설>	**제18조(위탁의 해지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 1.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.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.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<신 설>	**제19조(운영경비 등 지원)**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센터의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외국인주민센터 임복렬 2015-11-17 20:25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**제5장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**
〈신 설〉	**제20조(설치 및 운영)**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상담지원을 위해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(이하 "상담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상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·수탁 계약에 따른다.
〈신 설〉	**제21조(기능)** 상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외국인주민 전화상담, 방문상담 및 출장상담에 관한 업무 2. 생활정보제공, 임금체불·퇴직금, 연금·보험, 사업장변경, 재고용, 산업재해, 출입국, 의료, 민사·형사 사건, 성희롱·성폭력, 가정불화, 가정폭력 등 외국인주민 고충과 관련된 상담지원 및 연계 업무 3. 그 밖의 통역 상담지원 관련 업무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〈신 설〉	**제22조(운영경비 등 지원)**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지원센터의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〈신 설〉	**제23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상담지원센터의 선량한 관리·의무자로서 외국인의 인권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·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**제24조(위탁의 해지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 1. 수탁자가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.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
<신 설>	**제6장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**
<신 설>	**제25조(용어의 정의)** "이주배경 청소년"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8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.
<신 설>	**제26조(설치 및 운영)** ① 시장은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정책 시행을 위하여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(이하 "청소년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센터를 「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③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·수탁 계약에 따른다.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센터의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외국인주민센터 임복렬 2015-11-17 20:25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**제27조(기능)** 청소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·정서 안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 2.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.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.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신 설>	**제28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청소년센터의 선량한 관리·의무자로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<신 설>	**제29조(위탁의 해지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 1. 수탁자가 제2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.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.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제4장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	**제7장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**
제14조(생략)	**제30조(현행 제14조와 같음)**
제14조2(생략)	**제30조2(현행 제14조의2와 같음)**
제15조(생략)	**제31조(현행 제15조와 같음)**
제16조(생략)	**제32조(현행 제16조와 같음)**
제17조(생략)	**제33조(현행 제17조와 같음)**
제18조(생략)	**제34조(현행 제18조와 같음)**
제19조(생략)	**제35조(현행 제19조와 같음)**
제20조(생략)	**제36조(현행 제20조와 같음)**

외국인주민센터 임복렬 2015-11-17 20:25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**제8장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**
<신 설>	**제37조(대표자 협의회 설치 및 구성)**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"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"(이하 "대표자 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대표자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대표자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 ④ 대표자 협의회는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⑤ 대표자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 중 사임 등으로 위원의 궐위가 발생하여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.
<신 설>	**제37조의2(대표자 협의회의 존속기한)** 대표자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.
<신 설>	**제38조(기능)** 대표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1. 외국인 주민 관련 각종 시책 의견수렴 2. 다문화 축제 및 행사 자문 3. 시책 홍보 및 외국인주민 의견 전달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신 설>	**제39조(운영)** ① 위원장은 대표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 대표자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정기회 : 격월 개최 2. 임시회 :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대표자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**제40조(위원의 위촉 해제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1.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 참석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
〈신 설〉	**제41조(수당 및 여비)** 대표자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5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등	**제9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등**
제21조(생략)	**제42조(현행 제21조와 같음)**
제22조(생략)	**제43조(현행 제22조와 같음)**
제23조(생략)	**제44조(현행 제23조와 같음)**
제24조(생략)	**제45조(현행 제24조와 같음)**
제25조(생략)	**제46조(현행 제25조와 같음)**
제26조(생략)	**제47조(현행 제26조와 같음)**
제27조(생략)	**제48조(현행 제27조와 같음)**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732

제안년월일 : 2015. 12. 10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○「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」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함.

○「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」를 외국인 주민들의 자율조직으로써의 의미를 부여함.

○ 신규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존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2년으로 수정함.

□ 주요골자

○ "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"를 "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"로 함.(제6장)

○ "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"를 "외국인주민 협의회"로 수정함. (제8장)

○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함. (제37조의2)

의회사무국 이향례 2016-01-21 09:56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2항 중 "약정을 체결한다." 를 "위·수탁계약에 따른다." 로 한다.

안 제6장 제명 "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" 를 "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" 로 한다.

안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5조(용어의 정의) "이주배경 청소년" 이란 9세이상 24세이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으로서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.

안 제26조제1항 중 "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" 를 "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"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센터" 를 "청소년센터"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" 를 "3년 이내로" 로 한다.

안 제37조제4항 중 "대표자 협의회는" 을 "협의회 위원은" 으로 한다.

안 제37조의2 중 "2019년" 을 "2017년" 으로 한다.

안 제8장 제명, 제37조 제명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같은 조 제5항, 제37조의2 제명, 제38조,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 중 "대표자 협의회" 를 각각 "협의회"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9조(설치 및 운영)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를 「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재지정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.	제9조(설치 및 운영)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를 「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.	제9조(설치 및 운영) 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위·수탁계약에 따른다.
〈신 설〉	제6장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	제6장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
〈신 설〉	제25조(용어의 정의) "이주배경 청소년"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8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.	제25조(용어의 정의) "이주배경 청소년"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으로서 사회 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.
〈신 설〉	제26조(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하여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(이하 "청소년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	제26조(설치 및 운영) ① ---------- ---------- -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---------- ----------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수 있다.	-----
	② 시장은 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센터를 「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의2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청소년센터----------
	③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·수탁 계약에 따른다.	③ ------- 3년 이내로 ----------
	④ (생략)	④ (원안과 같음)
<신 설>	제8장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	제8장 외국인주민 협의회
<신 설>	제37조(대표자 협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"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"(이하 "대표자 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37조(협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----------협의회"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	② 대표자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협의회----------
	③ 대표자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	③ 협의회----------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장이 지명한다. ④ 대표자 협의회는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⑤ 대표자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 중 사임 등으로 위원의 궐위가 발생하여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.	-------- ④ 협의회 위원은 ---------- ⑤ 협의회----------
<신 설>	제37조의2(대표자 협의회의 존속기한) 대표자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.	제37조의2(협의회의 존속기한)----------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.
<신 설>	제38조(기능) 대표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 1.~4. (생략)	제38조(기능) 협의회---------- 1.~4. (원안과 같음)
<신 설>	제39조(운영) ① 위원장은 대표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 대표자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2.(생략)	제39조(운영) ① ----- 협의회---------- ② 협의회---------- 1. ~2.(원안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③ 대표자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③ 협의회 ----------
<신 설>	제41조(수당 및 여비) 대표자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41조(수당 및 여비) 협의회 ----------